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등 근거 신설 〉
■ 김재원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2
2.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평가 및 지원 등 근거 마련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재원의원 · 민형배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2025. 5. 29.

다. 회 부 일: 2025. 5.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평가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지속가능관광도시”란 관광 활동 전반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u> <u>가.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u>

	<u>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u> <u>스 감축</u> <u>다.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u> <u>호</u> <u>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u> <u>및 지역경제 상생발전</u> <u>마.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유</u> <u>도 및 참여 확대</u>
--	--

다. 검토사항

- ‘지속가능관광(sustainable tourism)’은 통상 ‘친환경과 자원 효율성
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사회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지속가능관
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광객, 관광산업, 환경,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최근 관광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속가능관광의 개념
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지속가능관광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
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

1)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에서도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부터 해당 지역 환경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⑩ (생략)

○ 이에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관광 활동 전반에 걸쳐 ①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③ 자연환경 및 유산보호, ④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⑤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유도 및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관광 활동과 관련하여 관리·개선의 대상으로 설정된 사항들 중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자연환경 및 유산보호 등은 타 부처나 타 법률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정의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 규정 중 관리개선 사항 현황 >

지속가능관광도시의 관광 활동	관련 법률	소관 부처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자연환경보전법」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 둘째, 현행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별도로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정의하게 되는 경우 두 조항 사이의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정의 규정 신설 필요성과 현행 조항의 정비 여부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조제14호의 ‘지속가능관광도시의 관광 활동’의 각 호는 현행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1항으로 대체 가능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평가 및 지원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과 성과평가, 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48조의14(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u> <u>1.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정도</u> <u>2.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u> <u>3. 관광객 1인당 환경부하지수</u>

<신 설>

4.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도시
의 신청 방법, 세부적 평가기
준,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8조의15(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
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
관광도시에 대해 3년마다 성과
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
조의14에 따라 지속가능관광도
시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신 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이 반복된 경우

4. 지정을 받은 자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6(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시설 조성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5.·6.</u> (생략)	<u>에 필요한 재정지원</u> <u>2.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u> <u>3.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u> <u>4.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u> <u>5. 성과우수 도시 인센티브 지급</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48조제15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7조(청문) ----- ----- ----- -----. 1. ~ 4. (생략) <u>5. 제4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취소</u> <u>6.·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정도,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관광객 1인당 환경부하지수,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성과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신설하였음.
- 또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지속가능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 성과우수 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런데,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관련 평가 기준 중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관광객 환경부하지수 등은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산출하는 절차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 등 관광부문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과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기여도, 관광객 환경부하지수 등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 지정절차,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에 열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평가·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통합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